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서동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Corresponding Author : dongchun.seo@gmail.com

국 문 초 록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종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고건축물, 고적 및 유적 보존수리, 보존비, 보존보조비, 문화재 보존 법규

투고일자 2017. 07. 14 • 심사일자 2017. 10. 25 • 게재확정일자 2017. 11. 13



I. 서론

일제강점기에 한국 문화재 보존수리의 개념이 처음 정착되고 확립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전국적인 고적조사가 실시되었고 더불어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립되면서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또는 수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건축사학뿐만 아니라 미술사학, 고고학, 민속학, 지질학, 문헌사학 등의 역사적 관점에서 고적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건축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고적 및 유물 즉,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이 정비되면서 고건축물의 보존수리 공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최초의 보존수리 공사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보통문(1913년) 및 석굴암(1913, 1915)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건축 유적이 이 시기에 수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고적 및 유물 보존수리는 변화를 거듭하였고 체계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고건축물 보존수리는 고적 및 유물 수리의 초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의 보존수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보존수리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인지 아닌지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고건축물 보존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과정, 둘째, 해당 고건축물에 대하여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정적인 절차, 셋째, 해당 고건축물의 보존 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및 그 내용,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인 해당 고건축물이 보존수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건축물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역사연구 또는 고적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 역사연구 및 조사가 부족하여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적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한 고적조사는

대부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단계인 해당 건축물의 보존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및 내용은 보존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고건축물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수 수리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정에서 도출된 가치를 유지계승할 수 있도록 해당 고건축물의 보존수리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고건축물 보존수리는 항상 원형 복원이나 주요 역사적인 시점에서의 복원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고,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상황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하여 기술의 한계도 보다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은 연구자 및 전문가와 더불어 기술자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존연구는 주로 첫째 단계와 셋째 단계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둘째 단계인 고건축물 보존수리에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정하고, 이를 운용하는 절차 및 진행과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는 주로 행정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고건축 보존수리가 목표로 삼는 원형보존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비용을 집행하는 행정절차는 고건축물 보존수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불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며 시급한가에 대한 판단, 즉 문화재로서의 가치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또 이를 바탕으로 비용의 적합성과 운용방침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행정절차는 첫째 과정과 셋째 과정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고건축의 보존수리 비용을 집행하는 절차는 당시 고건축물 보존수리의 주체인 조선총독부가 건조물문화재를 대하는 자세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둘째 과정은 당시 사회가 건축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에서 고건축물, 즉 문화재 보존수리 정책을 세웠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일제강점기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운영체계를 밝혀서, 당시 문화재 보존수리의 주체인

조선총독부가 문화재를 대하는 기본방향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체계의 성립과정

1. 고적 및 유물 관련 법규와 시스템의 정착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책은 당시 일본정부의 영향 하에 있었으므로 먼저 일본의 문화재 관련 법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문화재 관련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된 법규는 「고기구물보존방(古器舊物保存方, 1871년)」이다. 여기에는 유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보존해야 하는 고적 및 유물의 품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물은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축 보존에 대한 규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사사보존법(古寺社保存法, 1897년)」이 처음이다. 이토 츠타(伊東忠太)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활약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 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이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였다.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을 기반으로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고건축 수리와 관련하여 몇 개 원칙을 추가하면서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고건축의 보존수리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문화재 관련 법규는 일제강점 이전에 시행된 「향교재산관리규정(鄕校財産管理規程, 1910년)」과 일제강점 이후에 시행된 「사찰령(寺刹令, 1911년)」에서 시작된다. 고 볼 수 있는데, 이 법령은 향교와 사찰을 합부로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법규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1916년)」으로, 유물 등록 및 수선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 법규와 더불어 「고적조사위

원회 규정(古蹟調査委員會規定, 1916년)」이 제정되어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제가 갖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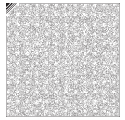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令, 1933년)」(이하 보존령으로 약칭)이 시행되면서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은 일제강점기 최초의 문화재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부령(府令)이므로 조선총독부 제령인 「사찰령(寺刹令)」이나 「보존령(保存令)」보다 낮은 권한의 규정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² 따라서 「보존령」에 부가하여 공포된 부령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시행규칙(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令施行規則, 1333년)」을 보면 부칙(附則)으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을 폐지하고 이것으로 대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보존령 시행규칙은 동일한 위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보존령이라는 상위 법령의 제정으로 일제강점기의 고적 및 유물에 대한 규정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보존수리 공사 관련 규정의 변화와 양상

1911년에 제정된 「사찰령」과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 1911년)」에서는 건축물을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화재급의 고건축물의 현상변경을 합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즉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호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정이다. 관유 건축물의 보존과 처분 결정권은 총독부에 있었고,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령으로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변형 및 개수에 대하여 총

1 본 절의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은 강현, 2005,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 보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1~94; 박정희, 2008,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와 실현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7~61; 金玟淑, 2008,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關する研究 - 修徳寺大雄殿修理工事を中心に -」, 早稲田大学博士学位論文, pp.15~25; 清水重敦, 2013, 「建築保存概念の生成史」, 中央論美術出版, pp.148~169, 219~252 등 기존 연구의 내용을 수렴하여 간략히 정리하였다.

2 田中禎彦, 2005, 「20世紀前半の朝鮮總督府による朝鮮の歴史的建造物の調査保存事業について」,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第294号, pp.214.



독의 허가를 취하는 제도였다.³ 1916년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제정되어 고적 및 유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고적의 범위에 고분, 도성, 궁전, 성채, 관문, 사우, 단묘, 사찰이 포함되고, 유물의 범위에 탑이 포함되어 건축물도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석탑을 제외하고 건축물은 거의 등록되지 않았다. 1916년 이후 고적조사의 주요대상은 주로 사적이나 미술품이었으므로⁴ 이 규칙 제정 이후에도 건축물은 등록된 문화재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건축물이 본격적으로 보물 등의 유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 것은 1933년 「보존령」이후이다. 일본에서는 이보다 앞서 1929년 「국보보존법(國寶保存法)」이 공포되었고 보존수리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정들도 함께 제정되었다. 1897년의 「고사사보존법」을 개정하여 「고사사건조물수리규정」으로 발전시켰고, 「국보건조물수리시행준칙(國寶建造物修理施行準則, 1932년)」이라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보건조물유지수리요항(國寶建造物維持修理要項, 1940년)」을 제정하여 완성하였다. 이는 일본의 강점 하에 있었던 한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보물건조물수리시행준칙(寶物建造物施行準則)」과 「모사모전수리공사취급수속(某寺某殿修理工事取扱手續)」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⁵ 일본과 한국의 고건축물 보존수리 규정은 상당히 유사하였고,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의 복명서(復命書)를 통해서도 일본 규정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3.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규정 상 차이

「보존령」 이전에도 구체적인 공사진행과 관련된 규정

이 보인다. 1915년 분황사구층탑의 보존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시행순서(工事施行順序)」를 결정하여,⁷ 보존비보조공사의 시행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를 개정하여 1919년 8월 불국사 보존공사 시행과 더불어 「고적보존비보조공사시행수속(古蹟保存費補助工事施行手續, 1919년)」을 결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조선총독부는 「고적보존공사시행표준(古蹟保存工事施行標準, 1917년)」⁸을 발표하였다. 고적보존비보조공사시행수속과 고적보존공사시행표준의 가장 큰 차이는 공사를 청원하는 사람의 유무이다. 보존비보조공사시행수속은 공사청원자가 청원을 했을 때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고적보존공사시행표준에는 따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 전자는 보존비보조공사의 진행절차이고 후자는 보존비공사의 진행절차이다.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유 고건축물의 보존수리이므로, 따로 청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하여 조선총독부가 예산을 배부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공사이고, 보존비공사는 관유 건축물에 대하여 고적조사위원회 등에서 보존수리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되므로 따로 청원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건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관이다.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고건축물의 보존수리공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Ⅲ.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구분

1.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구분과 특징

일제강점기 고건축물의 보존수리 절차는 해당 건축물

3 田中禎彦, 2005, 전게서, pp.210.

4 藤田良策, 1933, 「朝鮮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朝鮮總覽』, 朝鮮總督府, pp.1034.

5 「건조물수리시행준칙」과 「모사모전수리공사취급수속」의 내용은 교토(京都)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오가와게이키치(小川敬吉) 자료에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며, 金珉淑, 2008, 전게서, pp.56~61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도쿄, 교토, 나라 보물 보존공사 사무 협의 및 시찰」, F011-003-001-001 ~ F011-003-010-019.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문서, 「芬皇寺九層塔補助工事施行順序ノ件」, A088-003-001-001 ~ A088-003-001-012.

8 朝鮮總督府財務局, 1930, 『朝鮮官有財産法規集』, 朝鮮總督府, pp.212~213.

표 1.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분류

분류기준	보존비공사	보존비보조공사
소유관계	조선총독부 및 지방 관청 소유	민간 및 조선왕실 소유
해당 유적 및 유물의 종류	왕릉, 왕릉 발굴 유적 및 유물, 관청(객사 및 관아)이 소유하는 유적 및 유물, 향교가 소유하는 유적 및 유물, 왕궁 및 왕궁터와 그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조선왕실 소유 유적 중 관유로 이관된 사묘, 성곽 및 문루, 폐사지에 남아 있는 유물과 유적, 기타 관유지에서 발굴되어 새로 발견된 유물	사찰이 소유하는 전각 및 탑, 불상 등의 유물, 개인 및 문중 소유의 서원이 소유하는 유적·유물, 기타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는 유물
구체적 사례	수원 화성 일곽, 평양성 일곽, 승례문, 흥인지문, 강릉 객사문, 성천 동명관, 진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 동묘, 경주 동경관, 의주 남문, 부여 능산리 고분, 경주 금관총 등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분황사 구층탑, 청평사, 전등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당 및 무량수전, 개풍 관음사 대웅전, 수덕사 대웅전, 청평사 극락전 및 회전문, 장안사 사성전, 화엄사 각황전, 무위사 극락전 등

이 관유물이나 사유물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고건축물이 역사적인 가치가 커서 보물로 등록되었고, 그 건물의 보존수리가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해당 고건축물이 개인 소유이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사가 가능하다. 즉 해당 고건축물의 소유자가 보존수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공사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관유물이면 국가 또는 정부가 보존수리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보존수리공사 진행절차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제강점기에 유물로 등록되어 있고 조선총독부가 관리하는 고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방의 지방관이 보존수리가 시급함을 보고하면 조선총독부는 미리 편성된 예산 중에서 보존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공사가 보존비 공사에 해당한다. 반면 고건축물의 상당수는 사찰이나 서원 등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소유한 사유재산이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조선총독부에 보존수리 공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하면 이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통해 보존보조비 예산 중에서 지출하여 지원하였다. 이것이 보존비보조공사에 해당한다. 다음의 <표 1>에서 구체적인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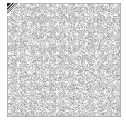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건조물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대부분은 관유물이 아니다.⁹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고건축물은 주로 사찰이나 신사에 있으므로 사유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보존수리공사가 보존비보조공사에 해당한다. 즉 일본의 건조물문화재 보존수리 공사는 보존비보조 개념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고사사보존법」, 「국보건조물수리시행준칙」, 「국보건조물유지수리요항」 등 일본의 보존수리 관련 규정들은 모두 보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문화재급의 고건축물 상당수가 조선총독부의 관리 또는 소유 하에 있었다. 따라서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양분된 체계는 한국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예산집행

1918년 7월 13일 평양명승구적보존회장 혼다 즈네키치(本田常吉)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보낸 청원문을 통해 5년간 10,000원씩 현무문, 종각, 기자궁 등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물에 대한 보존수리비로 국고 보조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¹⁰ 이에 대하여 1919년 11월 3일 조선총독부 서무부장이 평안남도

9 일본의 경우 관유 건조물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성곽과 관청,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보 문화재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223건 중 10건이며, 중요문화재로 범위를 넓혀도 2304건 중 총 192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대부분은 근대문화재였으므로 문화재관련 규정을 제정하던 시기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근대부터 존재하던 문화재는 성곽인데, 성곽 중에서 최초로 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마츠모토 성(松本城) 천수(天守)이었으므로 문화재 관련 규정이 정비된 이후에 기재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건조물문화재는 모두 사유물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古蹟遺物保存二關シ補助願」, A065-016-004-001 ~ A065-016-004-003.



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통해 고적유물 보존비보조신청의 건은 총독부 예산 중 고적보존비보조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원래 현존 사찰의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수리하는 경우에 배급하는 것으로 일반 고적 및 건물의 보존은 고적조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고적보존회에 대하여 보조할 만한 경비는 없다고 통보하였다.¹¹ 비슷한 사례가 그 이전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1916년 3월 해주보승회(海州保勝會)가 해주 광조사(光照寺) 비석의 비각 건립을 청원하였는데 반려되었다. 광조사 비석은 비록 사찰의 비석이기는 하지만 폐사지에 속하므로 관유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보존비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존비보조 명목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¹² 비슷한 시기에 개성보승회(開城保勝會)가 청원한 개성 만월대의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반려되었다.¹³

위의 사례를 보면 해주보승회장, 개성보승회장, 평양명승구적보존회장은 해당지역의 지방관이므로 조선총독부 규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존비와 보존비보조로 구분하는 체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시기까지는 지방관이 실수할 정도로 보존비와 보존비보조로 구분하는 체계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착오는 1920년 이후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존비보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본 체계를 모방한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보존비공사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19년 11월 1일 토목부장이 서무부장에게 보내는 서류를 통해 고적조사비를 경기도 790원, 충청북도 550원, 충청남도 1,310원, 전라북도 1,710원, 경상북도 1,070원, 경상남도 1,560원, 황해도 500원, 평안남도 1,750원, 강원도 300원, 함경북도 100원, 함경남도 200원을 각 도에 지급하도록 통보하였다.¹⁴ 그 외에 1922년에 고적조사과장이 회계과장에게 보낸 예산배부 관련된 서류에서 의주 통군정(統軍停) 수선비 200원, 벽제관 수선비 294원, 전주남문 수선비 1,000원, 강릉 객사외문 수선비 50원, 이렇게 총 1,544원을 고적조사비 예산 중에서 각도 지사에게 배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¹⁵ 또 1922년 9월 7일 기안의 고적조사과장이 회계과장에게 보낸 예산배부와 관련된 문서에서 회령군 운연비(雲淵碑) 보존공사에 50원, 부여 평제탑(平濟塔) 주위 목책 수선공사에 221원 62전을 각도 지사에게 고적조사비에서 배부하도록 요청하였다.¹⁶ 다른 서류에서는 1922년 10월 16일 고적조사과장이 회계과장에게 보낸 예산배부 관련 서류에서 대동문(大同門) 석담 및 흙벽 수선 공사비로 60원 10전을 고적조사비에서 배부하도록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¹⁷ 1923년 3월 1일 학무국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서류에서 수원이 수해를 당해 발생한 유실물 수거비로 244원을 고적조사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¹⁸ 1923년 4월 12일 기안의 학무국장이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내는 서류에서 신라 진흥왕척경비(眞興王拓境碑) 비각 건설을 위해 고적조사비에서 7,178.48원을 지출할 것을 의뢰하였다.¹⁹ 1924년 9월 9일 결재의 학무국장이 경

1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古蹟遺物保存二關スル件」, A065-016-001-002.

1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68-003-002-002.

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A068-005-001-004 ~ A068-005-001-006.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다이쇼(大正) 8년도 각도 고적계획비」, A065-011-001-001 ~ A065-011-001-002.

1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豫算配付ノ件」, A060-006-001-001.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운연비 백제탑 수선」, A060-007-001-001.

1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大同門石垣及土屏修繕ノ件」, A060-012-003-001.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수원 수해 유실품 수집(蒐集)」, A060-017-001-001.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진흥왕척경비(眞興王拓境碑) 비각 건설」, A060-027-023-001.

기도지사에게 보내는 서류에서 수원 화홍문(華虹門) 수리를 위해 고적조사비에서 2,700원을 지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제20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해당 공사비로써 3,000원을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지만 1할을 줄여서 지급함을 함께 통보하였다.²⁰

위 내용은 1922년에서 1924년까지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에서 보존수리비가 고적조사비에서 지출된 경우를 열거한 것인데, 그 내역을 보면 성곽 및 성문수리에서 비각, 목책의 수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관유 건조물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액수도 200원에서 7,178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보통 보존조비로 사찰 등에 지급되는 금액은 순수하게 보존수리공사에 대한 지원금이다. 사유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당연히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일반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관유 건조물문화재는 모두 보존수리공사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조선총독부가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의 품목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1929년 4월 26일 학무국장이 평안남도지사에게 보내는 문서를 통해 재무국장에게 낙랑고분의 수선비로 지방청 전릉 및 고적수선비에서 247원을 배부하도록 요청하였다.²¹ 또 1929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가 학무국장에게 보낸 서류에서 부여유물진열관 개수와 관련하여 수축비 230원을

고적조사비에서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² 1930년 1월 24일 기안에서도 학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서에서 영남루 수선비로 고적조사비에서 2,000원을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²³ 1930년 3월 22일 학무국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서에서도 회계과장에게 고분 석표 건설에 대한 금액 62원을 고적조사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렇게 이 시기까지의 보존비 관련 예산은 고적조사비 명목에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 6월 23일 문서에서는 창의문 수선비 425원을 지방청 「전릉 및 고적수선비(地方廳殿陵及古蹟修繕費)」에서 지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²⁵ 그리고 1931년 8월 30일의 문서에서 천연정 보존수리비로 「지방청 전릉 및 고적수선비」에서 324원을 지출하도록 요청하였다.²⁶ 이후에도 1932년과 1933년의 전릉 및 고적수선비 신청내역을 보면²⁷ 보존비를 더 이상 고적조사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전릉 및 고적수선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전릉 및 고적수선비는 1934년부터 예산 명칭이 「전릉 및 보물 고적 명소 천연기념물보존비(殿陵及寶物古蹟名所天然紀念物保存費)」로 바뀌고, 다시 1936년에 「보존비」로 바뀌는 것이 확인되지만 이는 동일한 명칭의 약칭이라고 추정된다.²⁸ 전릉 및 보물 고적 명소 천연기념물보존비로 바뀌면서 예산이 급증하게 되므로²⁹ 「보존령」 이후의 문화재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공식명칭은 「전릉 및 보

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고적조사비 예산 배부의 건」, A060-036-001-001 ~ A060-036-001-002.

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낙랑 고분 보존수선비 예산 배부의 건」, A059-003-001-001 ~ A059-003-001-003.

2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扶餘遺物陳列館改修二關スル件」, A058-010-003-001 ~ A058-010-003-002.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密陽嶺南樓修繕費豫算配賦ノ件」, A059-008-002-001 ~ A059-008-002-003.

2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유물 소재지 및 조사 완료[濟] 고분 석표(石標) 건설 건」, A059-007-006-001 ~ A059-007-00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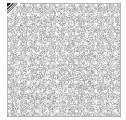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문서, 「古蹟修繕費豫算配付二關スル件」, A056-004-004-002.

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殿陵及古蹟修繕費豫算配付二關スル件」, A056-007-002-004.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소화7년도 殿陵及古蹟修繕費配賦申請扣, 소화 8년도 殿陵及古蹟修繕費配賦申請控」, A098-002-001-001 ~ A098-002-001-003, A098-003-001-001 ~ A098-003-001-003.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소화 11년도 보존비」, A101-007-001-001.

29 1933년 10,030원에서 1934년 18,980원, 1935년 43,980원으로 급증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昭和八/九/十年度 殿陵及古蹟修繕費/殿陵及寶物古蹟名所天然紀念物保存費」, A101-004-001-001, A101-005-001-001, A101-006-001-001.



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조사 및 보존비(殿陵并寶物古蹟名勝天然紀念物調査及保存費)이다.³⁰ 여기에서 193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보존수리비가 고적조사비에서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전릉 및 고적수선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다가 「보존령」 이후에 기존의 「고적조사비」와 「전릉 및 고적수선비」가 「전릉 및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조사 및 보존비」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의 사례 분석

1. 「보존령」 이전의 사례 분석: 관음사 대웅전과 밀양 영남루 보존수리공사 비교

본 장에서는 보존비공사의 보존비보조공사의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관음사(觀音寺) 대웅전 수리공사는 1931년 9월, 주지 이근식(李根植)이 청원하여 총 공사비 7,331원 중 6,300원 보존비보조를 받아 행해진 공사이다. 1935년 6월 26일에서 1936년 3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밀양 영남루는 1929년 10월 경남도 지사의 보고로 공사가 시작되어 1931년 초까지 진행된 보존비공사이다. 예산 15,722.5원 중 8,853원을 보존비로 지출하였는데 중간에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총액이 17,236.5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중 8,383.5원을 민간지원으로 충당하였다. 보존비공사로서는 민간보조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두 공사의 상세는 <표 2>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보존령」이후의 사례 분석: 개심사 대웅전과 평양 대동문 보존수리공사 비교

일제강점기 말 어느 정도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시

행된 보존보수 공사를 예로, 보존공사는 평양 대동문을, 보존비보조공사는 개심사(開心寺) 대웅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심사 대웅전과 평양 대동문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고건축물로, 개심사 대웅전은 보물 제239호로 지정되어 있었고, 1941년 1월부터 1944년 5월까지 총 51,500원의 보존비 국고 보조가 지급되어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평양 대동문은 보물 제136호로 지정되어 있었고, 1936년 10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총 55,749원의 보존비가 지급되어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표 4>와 <표 5>에서 두 공사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였다.

3. 보존비보조공사와 보존비공사 진행과정 비교

보존비보조공사와 보존비공사를 비교해 보면 공사청원을 위하여 제출하는 설계서, 공사 내역, 설계도면 등 거의 일치한다. 문화재급의 고건축 보존수리 공사의 경우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건축물을 수리하는 공사는 사유인지 관유인지에 관계없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한데, 평양 대동문과 장안사 대웅전 수리공사에서는 가설 시설물에 대한 도면도 함께 제출하지만,³¹ 개심사 대웅전과 밀양 영남루는 가설 시설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사의 결과물로 제출하는 서류에 있어서 보존비보조공사와 보존비공사는 큰 차이가 없었고, 단지 가설시설물이 필요한 공사인지 아닌지 등의 공사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존비보조공사와 보존비공사의 차이는 절차상의 차이이며, 그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사 청원자와 청원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점이다. 개심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청원자가 개심사 주지이

3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불국사 사리석탑 조제공사에 관한 건」, A079-017-001-002.

3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長安寺大雄殿假設素屋根略圖」, A087-009-008-001.

표 2. 「보존령」 이전 보존비보조공사의 진행절차(관음사 대웅전 보존수리 공사)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31. 9.25		관음사주지	이근식	조선총독	宇桓一成	관음사 대웅전 국고보조 신청원	대웅전 수선 자금 자력 조달 어려우니 국고지원 바람	관음사재산조사서, 전년도 세입세출 현황
1931. 12.10		경기도지사		학무국장		사찰건물 수선비 국고보조 신청의 건	위 문서를 학무국장에게 전달	
1932. 3.30		경기도지사		학무국장		관음사수선비 국고보조 건	지방비에서 500원 지원, 시급한 국고지원을 재차 건의(우기에 전도 위험이 있음).	
1932. 10.22		관음사주지	이근식	조선총독	宇桓一成	국고보조 신청원	총공사비 7,331.02원 중 지방유지 53.02원, 지방비 1,000원, 나머지 5,800원 지원바람	관음사대웅전 수선설계서, 관음사 대웅전 공사 설계 명세서
1932. 10.25		전등사주지	이보인	조선총독		국고보조 신청에 관한 건	관음사 대웅전의 국고보조 필요하지만, 전등사 수선도 시급, 국고보조 요망	
1932. 11.8		경기도지사		학무국장		관음사수선비 국고보조 건	국고보조 5,800원 청원하고 지방비 1,000원으로 총당하는 계획 현실적 불가. 총6,300원 지원 바람	
1933. 2.16	1933. 3.11	결재 서류				고적보존비 보조 건	국고보조로 1,500원을 지원하기로 함	
		조선총독	宇桓一成	관음사주지	이근식	지령안	1932년도 예산에서 1,500원 하부	
총독부문서상 누락되어 있지만 1933.3.13. 문서로 신청액 6,300원 중 5,300원만 보조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1933. 7.29		경기도지사		학무국장		관음사 수선에 관한 건	관음사 대웅전 공사 지휘할 직원 파견과 1933년 예산 중 3,800원 지원 요청	
1933. 9.21	1933. 10.5	결재 서류				고적보존비 보조 건		
		조선총독	宇桓一成	관음사주지	이근식	지령안	1933년도 예산에서 1,500원 하부	
		학무국장		경기도지사		통첩안	국가예산부족, 신청액 중 1,500원만 지급	
학무국장		재무국장		통첩안 제2안				
1934. 7.26		경기도지사		학무국장		관음사 수선에 관한 건	국고보조 5,300원만 지원, 부족분 1,000원 해당 사찰에서 조달하기 어려움. 남은 보조금에 1,000원을 더해 3,300원 지원 요망	
1934. 9.26	1934. 10.8	결재 서류				보물보존비 보조의 건		
		조선총독	宇桓一成	관음사주지	이근식	지령안	1934년도 예산으로 공사비 3,300원 하부	
		학무국장		경기도지사		통첩안 제1안	3,300원 지원금으로 공사 마칠 것	
학무국장		재무국장		통첩안 제2안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36. 7.22		관음사주지	이근식	조선총독	宇桓一成	관음사 수선공사 준공보고	1935년 6월 26일부터 1936년 3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보고	정산서, 수선공사 내역서, 수리 완성 사양, 수리공사 실시사양, 도면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A057-003-001 ~ A057-003-025-012)

표 3. 「보존령」 이전 보존비공사 진행절차(밀양 영남루 보존수리공사)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29. 10.16		경상남도지사	조선총독	영남루 수선에 관한 건	응급 수선이 필요하므로 수선비 15,722.50원 청구	영남루 및 객사 수선 공사 설계서
1929. 10.21	1929. 10.26	결재서류		영남루수선비 배부의 건		
		학무국장	경상남도지사		1,853원 별도 배부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도를 강구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1929년 전릉 및 고적수선비 예산에서 1,853원 배부	
1930. 1.24		결재서류		밀양영남루 수선비 예산 배부의 건		
		학무국장	경상남도지사		고적조사비에서 2,000원을 증액하기로 함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영남루 수선비로 2,000원 배부바람	
1930. 4.19		경상남도지사	학무국장	밀양영남루 수선공사 시행의 건 회보	배부 받은 금액으로 수선공사 종료(수선목록, 공비수록, 총 3,846원 사용에 대한 내역표 수록)	
1930. 5.22		경상남도지사	조선총독	영남루 수선에 관한 건	공사액 15,722.50원 중 3,853원 예산 배부 받아 일부 완료. 남은 금액을 계속 지원바람	
1930. 8.5		경상남도지사	조선총독	영남루 수선에 관한 건	원래 공사액 13,383원 30전 중에서 민간 기부를 통해 8,383.50원을 충당하고 남은 5,000원을 국비로 충당해 주기 바람	밀양 영남루 및 객사 기타 수선공사 설계서
1930. 8.26	1930. 10.3	결재서류		밀양 영남루 수선비 예산 배부의 건		
		학무국장	경상남도지사		5,000원 별도 배부. 공사수료 시 공사내역 보고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지방청 전릉 및 고적수선비에서 지출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A059-008-003-001 ~ A059-008-010-008)

표 4. 「보존령」 이후 보존비보조공사의 진행절차(개심사 대웅전 보존수리 공사)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1940. 8.31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개심사 대웅보전 경사 응급처치원		
1940. 9.26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개심사 대웅보전 보강 응급처치에 관한 건	위 문서 학무국장에게 전달	
1940. 9.27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南次郎	국보 건조물수선비 국고 보조신청		소화 15년도 개심 사 수입지출예산, 개심사 대웅전 수 리계획서
1940. 10.23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국보 건조물수선비 국고 보조신청에 관한 건	위 문서 학무국장에게 전달	
1940. 11.8	1940. 11.28	결재 서류				개심사 대웅전 보존공사비보조 건 개심사 대웅전 보존공사 비보조 건	1940년도 예산에서 공사비 10,000원 보조 1940년도 예산에서 공사비 10,000원 보조	
		조선총독	南次郎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1941. 9.8	1941. 9.12	결재 서류				보물 개심사 대웅전 보존공사비보조의 건	소화 15년도에 이어서 8,000원 을 보조하기로 함	
		조선총독	南次郎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1941. 10.16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웅전 보존공사에 관한 건	개심사 대웅전 내부 벽화 보존을 요하는지 조사해줄 것을 요구	
1941. 11.18	1941. 11.19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보물 개심사 대웅보전 보존공사에 관한 건	개심사 대웅전 벽화조사에 보존 회 위원 小場恒吉과 기수 杉山 信三을 11월 18일~24일 일주 일간 파견 예정. 여비는 보존공 사비에서 지출	
1941. 12.2	1941. 12.3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보물 개심사 대웅보전 보존공사에 관한 건	小場恒吉과 杉山信三의 조사결 과, 벽화는 조선시대로 건조물 역 사와 관련. 중요자료로서 보존, 벽화는 해체 전에 모사한 후 보 존시설에 모사와 함께 존치 권장	
		기수	杉山信三	학무국장		복명서		
1941. 12.1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웅보전 보존공사에 관한 건	출장조사원 구체적 예비확인 요청	
1941. 12.5	1941. 12.8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보물 개심사 대웅보전 보존공사에 관한 건	여비에 대한 답변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41. 12.15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응보전 보존공사에 관한 건	여비 관련 서류 송부. 결재하여 반송할 것.		
1942. 2.16	1942. 3.7	결재 서류					보물 개심사 대응전 보존공사비보조의 건		
		조선총독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지령안	소화 16년도 예산에서 4,000원을 지원함. 단지 1940년 11월 28일의 지령조건을 준수할 것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통첩안 제1안			
		학무국장		재무국장		통첩안 제2안			
1942. 8.14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리공사 기간 연장 및 보조 증액 신청의 건	벽화보존 추가비용 발생. 물가폭 등 및 재료수급이 원활치 않아 기간연장 및 보조액 증대 필요. 부족액 28,292.78원 요청	보물 건조물 개심사 대응전 수리비	
1942. 8.22	1942. 8.26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개심사 대응전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신청의 건	공사의 현재 진행상황 및 수지 계산서 제출토록 해당 사찰 주지에게 시달		
1942. 11.19	1942. 12.7	결재 서류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리공사 기간연장 및 보조증액 신청의 건	공사기간 연장과 증액의 필요성 인정. 본 연도에는 일부만 지원하기로 결정	
		조선총독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지령안	소화 17년도 예산에서 10,000원 지급		
1943. 5.1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응전 벽화보존공사에 관한 건	벽화상태 불량하여 원본 보존하기 어려움을 별지를 통해 알림		
1943. 5.6	1943. 5.7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보물 개심사 대응전 벽화보존공사에 관한 건	벽화상태가 불량하여 원본 보존하지 않도록 인가		
1943. 9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小磯国昭	보물 개심사 대응전 현상변경허가 신청		건조물 개심사 대응전 현상변경 이유서	
1943. 9.15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응전 현상변경 허가신청의 건	위 문서의 전달		
1943. 10.15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小磯国昭	보조금 배부 신청의 건	보조금 19,500원 증액을 요청	개심사 수리공사 진행상황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43. 11.5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개심사 대응전 수리 비 국고보조금 교부 신 청의 건	위 문서를 전달	
1943. 11.13	1943. 12.1	결재 서류				보물 개심사 대응전 보 존공사비보조의 건	보조예정액 23,292원을 노력하 여 19,500원으로 절감했으므로 보조결정	
		조선총독	小磯国昭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지령안	개심사 대응전 공사비로 19,500 원을 보조 결정. 단 지령조건 준수	
1943. 11.26	1943. 11.29	결재 서류				보물 건조물 개심사 대 응전 현상변경의 건		
		조선총독	小磯国昭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지령안	1943년 9월 신청 보물 개심사 대응전 현상변경 허가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통지안		
1943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小磯国昭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 리 공기연장신청의 건	원래 1943년12월말로 준공 예 정. 재료 수급 문제로 1944년5 월로 연장 요청	
1944. 1.21		충청남도 지사		학무국장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리 준공기한 연장신청의 건	위 문서를 별지로 동일한 뜻을 전달	
1944. 1.27	1944. 2.1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 리공사 준공기한 연장신 청의 건	1944년5월까지 공기연장 허가	
1944. 4.25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小磯国昭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 리 공기연장 신청의 건	농번기라 일손 부족으로 1944년 8월 재차 연장 요청	
1944. 5.5		충청남도지 사		조선총독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 리 준공기한 연장의 건	위 문서를 별지로 동일한 뜻을 전달	
1944. 5.13	1944. 5.16	학무국장		충청남도 지사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 리 준공기한 연장의 건	1944년8월까지의 공기연장 허가	
1944. 8		개심사 주지	豊山千基	조선총독	阿部信行	보물 개심사 대응전 수 리 공기연장 신청의 건	1944년11월 말까지 연장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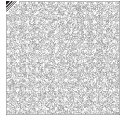


표 5. 「보존령」 이후 보존비공사 진행절차(평양 대동문 보존수리 공사)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35. 6.13		평양부윤	평양세무 감독국장	고적건물 수선에 관한 건	대동문, 연광정, 보통문의 고적수선 18,100원 소요. 평양부 자금부족, 국비 또는 국고보조 문의	설계서
1935. 6.20		평양세무 감독국장	재무국장	고적건물 수선에 관한 건	위 문서를 재무국장에게 전달	
1936. 6.19		평안남도지사	학무국장	대동문수리공사 설계의 건	밀약 대로 대동문수리에 관련된 서류를 보냄	공사비 연도별 예산표, 설계서, 공사내역서, 수리설계도
1936. 8.3	1936. 9.28	결재서류		대동문수리공사에 관한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제1안	본 년도 가설 등에 관계되는 8,000원만 지불	
		학무국장	재무국장	통첩안 제2안	본부 예산 중 감액하여 8,000원 지불하겠음	
1936. 9.25	1936. 10.6	결재서류		대동문수리공사 감독비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제1안	대동문 보존 공사 감독비로 1,977원 별도 지불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 예산 중 공사 감독비 1,977원 지불	
1936. 9.26		평안남도지사	학무국장	대동문 수리공사비 예산 건	6월 19일 송신 대동문 수리비관련 답변 요망	
1937. 5.4		평안남도지사	학무국장	대동문수리비 연도별 증액에 관한 건	공정 변경에 따른 대동문 수리비 증액 요청	공사비 연도별 배부금 변경서, 연도별 예산표, 공사 공정표, 공사 내역서
1937. 5.31	1937. 6.8	결재서류		대동문수리공사에 관한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신청액 25,000원 중 10,000원만 지급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 예산 중 10,000원을 지급하겠음	
1937. 5.31		촉탁 杉山民治	총독부박물관 사무소 小川敬吉	전보	약속어음으로 버텼지만 자금부족으로 내일부터 공사 중지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37. 7.22		평안남도지사	학무국장	예산배부 방침의 건	6월 17일 일부 예산 배부 받았으나, 조사비를 배부받지 못해 직원 급료 지급불가. 조속한 배부 요청	
	1937. 7.26	결재서류		대동문수리공사 감독비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대동문 수리공사에 대하여 감독비로서 별도로 3,582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 예산 중 공사감독비로 3,582원 지급하겠음	
	1937. 10.13	결재서류		대동문수리공사에 관한 건	본년도 예산 내 10,000원 증액 요청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본년도 10,000원을 배부하였지만, 이에 더하여 본부 예산 중 10,000원을 증액 분배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예산 중에서 10,000원 증액 분배하겠음	
1938. 4.18		평안남도지사	조선총독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 기념물 보존령 시행수속에 의한 보물 현상변경 신청	현재 공사 중인 대동문에 대한 현상 변경 신청	현상변경 이유서, 도면, 사진
	1938. 5.24	결재서류		대동문 수리공사의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공사비 5,000원만 지급, 잔액은 추후 감안하여 배부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예산 중에서 5,000원 증액 분배하겠음	
	1938. 7.5	결재서류		대동문수리공사 감독비의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대동문 수리공사에 대하여 감독비로 96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예산중 공사감독비로 960원을 지급하겠음(囑託杉山民治 월160원, 雇員岡田栄 월80원)	



작성 날짜	결재 날짜	송신	수신	제목	내용	첨부 문서
1938. 7.12		보존회장 大野一郎		보존회 부회 개최의 건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보존령에 의거 보존회를 개최하여 결정(위원: 24명, 한국인 2명, 최남선, 김대우)	
1938. 7.16		촉탁 杉山民治	小川敬吉	서신		
1938. 9.14	1938. 9.23	결재서류		대동문 수리공사의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공사비 8,000원과 감독비 2,572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잔액은 차후에 감안 하여 배부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 예산 중에서 공사비 8,000원과 감독비 2,572원 분배하겠음	
1938. 12.1	1938. 12.14			보존회부회 개최의 건	서면 통한 보존회 자문 결과 현상변경 승인 허락	
1939. 5.2		평안남도지사	조선총독	보물건조물 대동문 현상변경에 관한 건	1938년12월14일부로 현상변경이 허락되어 준공을 연기할 수밖에 없음을 청원을	공사연기 이유서
1939. 5.4	1939. 5.5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대동문 수리 준공 연장에 관한 건	1939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승인함, 단 원래 공사비 지급 예정액인 4,358원 지급 외에 추가지급 없음	
1939. 5.29	1939. 6.12	결재서류		대동문 수리 공사의 건		
		학무국장	평안남도지사	통첩안	준공을 연기하고, 공사비 4,358원, 감독비 1,30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공사비 증감은 없음	
		학무국장	재무국장	제2안	본부 예산에서 공사비 4,358원, 감독비 1,300원 분배	
1941.7		학무국장	재무국장	보물 성천동명관 수리공사에 관한 건	대동문공사감독 杉山民治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파직, 기소혐의에 대동문 준공보고 누락도 포함	

다. 개심사 주지는 조선총독에게 서신을 보내어 공사를 청원하였지만, 평양 대동문은 청원자가 평양부윤이고 그 청원 대상도 조선총독이 아닌 학무국장이다. 이는 결재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원자가 다르다는 점은 소유권이 다르므로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결재권의 경우, 보존비는 학무국장이 가지고 있고, 보존보조비는 조선총독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여받은 예산안에서 학무국장이 집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평양 대동문 수리공사에서 평안남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현상변경과 준공연기에 관한 서류, 두 가지 뿐이다. 현상변경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보존령」 5조에 조선총독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서류만 조선총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연장과 관련된 청원은 조선총독이 아닌 학무국장 명의로 승인된다는 점에서 학무국장에게 전달돼도 무방한 서류가 조선총독 수신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존보조비 결재권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조선총독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조선총독이 집행했던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실무담당자의 소관은 아니었는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둘째, 감독비의 지급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고건축공사에서 조선총독부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절차를 중시했다. 두 공사 모두 현장 감독자가 파견되지만, 개심사 대웅전의 감독자 출장 및 체류비는 공사비 안에서 지출되고, 평양 대동문은 조사비 명목으로 따로 지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사 착수시기에서 차이가 난다. 보존비공사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배부 받지 못하더라도 공사에 착수한다.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므로 적은 액수의 공사비로도 공사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존비보조공사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면 공사착수가 어렵다. 처음부터 연차계획을 세우고 보조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이유로 공사비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공사도 늦어질 수 있다. 관음사 대웅전은 1931년 청원하였다가 공사비 지급이 늦어져 1935년에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밀양 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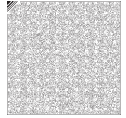
루는 공사비의 일부인 3,800원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비를 다시 지급받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적 및 유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고건축물의 경우 보존수리 공사를 통해 이상적인 복원을 추구한다는 가치는 공유하면서도, 해당 건축물이 보존비공사인지 보존비보조공사인지에 따라 진행 과정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보존령」 제정과 함께 명목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예산 집행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존비보조공사는 예산이 초기에 결정되고 그 집행은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에 있지만, 보존비공사는 모든 예산을 전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산 집행의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의 운용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의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은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라는 두 체계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 사유 고건축물의 보존수리에 지원하는 비용은 보존보조비라고 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보존비보조공사라고 한다. 또 관유 건축에 지원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존비라고 하고 보존비공사라고 하였다. 사유 건축물의 보수공사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존수리이므로 보존비를 보조해 주는 보존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양분된 체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운용하였다. 비용과 공사에 대한 호칭을 분류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가 이 체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존비보조공사는 보존비공사에 비해 비용 집행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의 고적 및 유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보존비보조공사의 경우 보존비보조비라는 책정된 예산 안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예산활용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보존비공사는 보존비라는 예산 안에서 운용하기는 하지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지출과 운영 주체가 조선총독부로 동일하다 보니 예상 외 지출이나 비용 산출의 오류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쉽다. 따라서 보존비보조공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는 점을 입증하고 인정받아야만 한다. 또 보존비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보수공사를 통해 관광산업 등의 경제적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집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존비 지출내역을 보면 보존비보조비 지출내역에 비해 소규모이거나 고적 및 유물 주변 정비사업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셋째, 보존비공사의 진행은 예산의 제약을 덜 받는 경향을 보인다. 보존비보조공사의 경우 예산집행을 결정하게 되면 처음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고적조사위원회를 통하거나 전문가의 현장검증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야 가능하다. 그만큼 예산을 결정하기도 변경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존비공사의 경우 식민지 정부가 관장하므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덜 갖추어지더라도 착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5>의 평양 대동문 보존수리와 같이 예산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지만, 보존비공사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착수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동적으로 운용되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보존비공사는 보존비보조공사에 비해 그 공종 및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비 지급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역사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관광 등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유적 및 문화재를 현상보존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보존비공사의

대상에는 고적 및 유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관유 건축물도 상당수 포함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문화재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다. 비석을 보호하기 위한 비각을 세우거나 고적이거나 고분의 주변을 정비하고 표석을 세우는 등의 문화재와 관련 없는, 오히려 관광산업 개발의 일환으로 지출되는 공사비, 그리고 훼손될 우려가 있는 유적에 대하여 목책이나 철책을 세워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시설과 경계 표석을 세우는 데 지출되는 공사비 등, 단순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보존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이들 공사는 고건축물 보수공사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존비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규모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듯 보존비 예산내역 안에는 다양한 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예산도 천차만별이다. 결국 보존비는 단순하게 고건축물의 보존수리에 지원되는 비용 이외에도 고건축물의 일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 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존비와 보존비보조비라는 양분화된 체제는 동일한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본국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문화재 보존수리 관련 법규의 절차에 있어서도 일본과 거의 유사하였음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조물 문화재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당시 일본에서 대부분의 건조물문화재가 사유물이었다. 사찰이나 신사가 대부분이므로 관유 건축물이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왕릉 및 고분을 비롯하여, 향교, 관아, 성곽 및 문루 등 상당수가 관유 건조물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 보존수리 체제는 관유건조물이라는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만 했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부였던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문화재 보존수리에 있어서 한국에 맞는 상황에 대하여 숙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모색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개선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1934년 이후에야 보존비공사의 예산명목이 정비되었을 정도로 그 이전에는 관유 건축물 수리비의 예산처가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이 부분을 개선하여 한국에 맞는 보존수리 예산 운영체계를 만들어내하고자 고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 2005, 『일제강점기 건축문화재 보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6~40, 81~94
- 김재국 · 박언근, 2005, 「1897~1945년의 문화재 보존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7호, pp.129~131
- 박정희, 2008,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적 체계와 실현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5~61
- 金玟淑, 2008, 『植民地朝鮮における歴史的建造物の保存と修理工事に關する研究 - 修徳寺大雄殿修理工事を中心に -』, 早稲田大学博士学位論文, pp.15~25, 56~61
- 藤田良策, 1933, 「朝鮮の古蹟調査と保存の沿革」 『朝鮮總覽』, 朝鮮總督府, pp.1034
- 日本内閣, 1934. 1. 25, 『官報』, 内閣印刷局 제2117호
- 田中禎彦, 2005, 「20世紀前半の朝鮮總督府による朝鮮の歴史的建造物の調査保存事業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294号, pp.210, 214
- 朝鮮總督府財務局, 1930, 『朝鮮官有財産法規集』, 朝鮮總督府, pp.1~5, 212~213
- 朝鮮總督府印刷局, 1911. 7. 8, 『朝鮮總督府官報』 제257호
- 朝鮮總督府印刷局, 1911. 6. 3, 『朝鮮總督府官報』 제227호
- 清水重敦, 2013, 『建築保存概念の生成史』, 中央公論美術出版, pp.148~169, 219~252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modern-history.museum.go.kr>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Seo Dong-Chun

Dept. of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dongchun.seo@gmail.com

Abstract

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to preservation and repair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means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such as Buddhist temples.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it was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o the same agent executed the budget and managed the properties. They included royal tombs and relics, old government offices, Hyanggyo and some Seow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they were private properties, so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rights only for permiss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If there was a request for preservation and repair by an own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cided on whether it would support its expenses or not and played a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applied to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and temples owned by individuals and families. Hence,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because the preservation cost was sp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dget for investigation expenses of historical remains or repair expenses of Jeolleung and ruins,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s. As for private buildings, the cost was spent from their budget for aiding preservation expenses, so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Because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were conducted by two different agents,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 in procedures for executing a constru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general progress of constructions but was an administrative difference in the kinds of



documents submitted and the roles of field supervisors.

Such dual systems remained unimprov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colonial government so much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ost Japane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and there was almost no build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unitary system unlike Korea. Heritage syste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l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definite solution in the bisected system of preservation and repair expenses for the heritage. It shows the limi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colonial era.

Keywords Architec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repair of heritage, Preservation expenses, Preservation-aided expenses, Regulations for heritage preservation

Received 2017. 07. 14 • **Revised** 2017. 10. 25 • **Accepted** 2017. 11. 13